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26-164호
(조달청공고번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평택시송탄출장소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6년 여름철 하수시설물 준설 단가공사(1구역)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위치	평택시 서탄면		
공사개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단가기초금액	3,974,000원
공사설계금액 금50,00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5,454,545원	4,545,455원	

※ 본공사는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사유 : 공사에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단가계약 견적제출이므로 단가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7.10.[금] 10:00 ~ 2026.7.14.[화]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7.14.[화] 13:00 평택시송탄출장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계약 공사이며 계약 시 각 공정별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다. **하수관로 준설(흡입 및 세정)차량을 소유한 업체(임차불가)**여야 하며, **준설 차량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개찰일 전일(2026.7.13.(월) 18:00)까지** 발주부서 감독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하수관리팀 ☎031-8024-6515]에게 방문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라. 여름철 하수시설물 준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소에서 발주하는 「2026년 여름철 하수시설물 준설 단가공사(1~5구역)」에 낙찰된 업체가 중복으로 낙찰될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업체별 1개의 사업만 낙찰자로 선정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8024-6515)

7.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의 계약(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 타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단가계약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9,533원	46,733원	61,748원	6,140원	-	54,912원	-	-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채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자.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차.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하도급자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제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요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회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회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파.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타 공사관련사항은 건설도시과(☎031-8024-6515), 공고문관련사항은 총무과(☎ 031-8024-604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터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송탄출장소재무관 귀하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송탄출장소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회사

대 표 : ○○○ (인)

평택시 송탄출장소재무관 귀하